

의안번호	2203985
의 퇴 인	이병진의원
회 답 일	2024. 10. 23.
추계번호	24B3800

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장기 인력수요 전망을 반영하여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정책을 수립·시행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,0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,000만원(연평균 6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공중방역수의사의 수급관리 및 실태조사(안 제4조의2제1·2항 신설) - 적정 수급정책 수립·시행 및 장기 인력수요 전망을 위한 연구용역 비용	30	—	—	—	—	30	6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조의2 신설 (공중방역수의사의 수급관리 및 실태조사)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제1항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공중방역수의사의 신규 편입 현황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인력수요 전망을 반영하여야 함(제2항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(제3항) 1. 공중방역수의사 공급 현황 2. 공중방역수의사 배치 현황 3.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형태, 근무여건 및 처우, 근무만족도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4. 그 밖에 공중방역수의사의 실태 및 특성 파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2	안 제16조제2항 신설(보수 등)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보수,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(이하 “보수등”이라 함)에 관하여 <u>현황조사</u> 를 실시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4조의2 신설 (공중방역수의사의 수급관리 및 실태조사)	○	(제1·2항 관련) •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참고 -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 및 장기적인 인력수요 전망 연구용역
		—	(제3항 관련) • 미대상 -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공중방역수의사 실태조사(3년주기)는 병무청, 지방자치단체,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,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을 통해 자체 조사 가능하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
2	안 제16조제2항 신설(보수 등)	—	• 미대상 -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등 현황조사는 지방자치단체,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을 통해 자체 조사 가능하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공중방역수의사의 수급관리 및 실태조사— 적정 수급 정책 수립 및 장기 인력 수요 전망(안 제4조의2제1·2항 신설)

□ 공중방역수의사 개요

- (공중방역수의사)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「병역법」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
- (업무) 가축방역기관(농림축산검역본부, 시·도 동물위생시험소, 시·군·구)에 소속되어 가축방역·동물검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업무 수행

※ [참고자료] 공중방역수의사 제도 참고

□ 공중방역수의사 선발·임용 및 예결산 현황은 다음과 같음

- 최근 5년간 공중방역수의사 선발 및 임용 현황

[표 2] 최근 5년간 공중방역수의사 선발 및 임용 현황: 2020~2024년

(단위: 명)

구분	2020	2021	2022	2023	2024
소요인원	150	150	150	150	150
실제 선발인원	150	150	150	127	103
근무인원수	148 ¹⁾	147 ²⁾	149 ³⁾	127	103

주: 1) 질병의 이유로 전시근로역 처분(2명)

2) 질병의 이유로 전시근로역 처분(2명), 면제 처분(1명)

3) 질병의 이유로 전시근로역 처분(1명)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자료

- 공중방역수의사 관련 사업 예결산 현황

[표 3] 공중방역수의사 관련 사업 예결산 현황: 2022~2025년(안)

(단위: 백만원)

사업명	주요내용	2022		2023		2024		2025
		예산	결산	예산	결산	예산	결산	예산안
가축방역대응지원 (3940-335)								
- 공중방역수의사 직무교육 등	공중방역수의사 직무 교육 비, 임관식 여비	61	45	61	33	53	집행중	53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자료

-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장기 인력수요 전망을 반영하여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정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- 본 추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중방역수의사 적정 수급정책 및 장기 인력수요 전망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, 해당 연구용역비용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계
 -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정책 수립 및 장기인력수요 전망을 위해, 추계기간 첫해에 연구용역 비용으로 3,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
 - 연구용역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공중방역수의사 실태조사 및 보수조사는 자체 조사가 가능하여 추가개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
- 추계결과,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장기 인력수요 전망을 반영하여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정책을 수립·시행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,0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4] 공중방역수의사 적정 수급정책 수립·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공중방역수의사 적정 수급 정책 수립 연구용역 (장기 인력수요 전망 포함)	30	—	—	—	—	30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이주호	배아형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주호	02-6788-3746	progress@nabo.go.kr

[참고자료] 공중방역수의사 제도

(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)

□ 공중방역수의사 개요

- **(제도 개요)**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「병역법」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로, 가축방역기관(농림축산검역본부, 시·도 동물위생시험소, 시·군·구)에 소속되어 가축방역·동물검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업무 수행
- **(관리체계)**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「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에 따라 근무할 가축방역기관을 정하여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고,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가축방역기관은 소속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에 대하여 지휘·감독하고 있으며,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방역기관의 공중방역수의사 관리 실태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 실태 등에 대한 지도·점검을 실시하고 있음
- **(주요 임무)**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및 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에 따른 가축방역·동물검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업무 수행
- **(근무 기간)** 「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의거 「병역법」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

□ 신분 및 보수

- **(신분)** 농림축산식품부에 소속된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
- **(보수)**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며, 봉급은 근무 기간에 따라 중위 1~3호봉 지급
 - **(보수)** 봉급, 가축방역수당, 정근수당, 명절휴가비, 가족수당(국비로 지급)
 - **(기타수당 및 여비)** 초과근무수당, 특수지 근무수당, 위험수당, 방역활동장려금(60~90만원), 여비, 맞춤형 복지제도(지방비로 지급)

<2024년도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 지급기준(기타수당 및 여비 제외)>

(단위: 원)

구분	봉급	가축방역수당	정근수당 (1, 7월 지급)	명절휴가비	가족수당
1년차	중위 1호봉	2,041,400	20,000	—	1,224,840
2년차	중위 2호봉	2,142,200	20,000	107,110	1,285,320
3년차	중위 3호봉	2,243,000	20,000	224,300	1,345,800

배우자 4만원,
직계존속 및 기타가족
2만원,
자녀(첫째 자녀 3만원, 둘째
자녀 7만원, 셋째 이후
자녀 1명당 11만원)

□ 선발 및 임용 현황

- (임용 인원) 최근 3년간(2022~2024년) 380명,
- (현재 근무인원) 379명(1명은 질병의 이유로 전시근로역 처분)

<최근 5년간 공중방역수의사 선발 및 임용 현황: 2020~2024년>

(단위: 명)

구분		2020	2021	2022	2023	2024
소요인원		150	150	150	150	150
실제 선발인원		150	150	150	127	103
지역별 근무인원수	농림축산 검역본부	22	28	19	15	8
	서울	0	0	0	0	0
	부산	0	1	0	0	1
	대구	0	4	0	2	0
	인천	2	1	2	0	0
	광주	2	0	0	0	0
	대전	0	0	1	0	0
	울산	0	3	0	1	0
	세종	3	0	2	1	0
	경기	28	12	24	22	4
	강원	14	13	14	12	11
	충북	13	9	15	12	5
	충남	14	18	13	16	15
	전북	12	16	10	10	17
	전남	10	12	12	13	22
	경북	9	19	19	12	9
	경남	16	7	16	10	6
	제주	3	4	2	1	5
	합계	148 ¹⁾	147 ²⁾	149 ³⁾	127	103

주: 1) 질병의 이유로 전시근로역 처분(2명)

2) 질병의 이유로 전시근로역 처분(2명), 면제 처분(1명)

3) 질병의 이유로 전시근로역 처분(1명)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자료